

2. 주택저당채권유동화중개회사법(안) 입법예고

재정경제부공고 제1998-168호

제정 이유

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한 후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등을 발행·보증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촉진할 수 있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중개회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택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택금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민의 주거복지향상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.

주요 내용

- 가. 주택저당채권유동화중개회사(이하 "중개회사"라 한다)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.
- 나. 중개회사의 최저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함.
- 다. 중개회사는 주택저당채권의 매입, 주택저당증권등의 발행 및 지급보증업무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한 부대업무를 행함.
- 라. 중개회사는 금융기관등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·운용 및 처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주택저당채권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채권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.
- 마. 중개회사가 발해야는 주택저당증권의 발행한도는 주택저당채권의 매입가액의 총액으로 하며, 동 중개회사가 부담하는 지급보증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.

- 바. 중개회사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, 이 등록을 한 때에는 민법상의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거나 저당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도록 함.
- 사. 중개회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행하되, 주택정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개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.